「法과 政策」 第16輯 第1號 2010. 2. 28.
濟州大學校 法과政策硏究所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for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김 상 찬* · 조 두 환**
Kim, Sang-Chan · Cho, Doo-Hwan

목 차

Ⅰ. 서론
Ⅱ.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발생 실태
Ⅲ. 학교안전사고의 손해배상책임
Ⅳ. 결론

국문초록

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에 대한 책임의 주체와 범위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 가해학생의 학부모, 학생과 교사 · 학교장와의 관계, 학생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설립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고의 원인이 학교 측의 안전의무 위반에 의한 것인지, 당해 학교가 국 · 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사고발생이 교육활동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배상책임의 주체와 책임범위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책임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안전사고의 경우에 배상책임

논문접수일 : 2009.12.30
심사완료일 : 2010.2.5
게재확정일 : 2010.2.5
* 법학박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책임연구원)
** 박사과정,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공동연구원)

의 법리로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상 공작물책임에 의한 학교시설사고를 제외하고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특수불법행위책임 및 재학계약관계에 근거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이 중에서 불법행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많은 실정이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에게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교육적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불법행위책임 보다는 재학계약관계에 근거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유무에 대한 판단은 예측가능성이 증시되므로 사고발생의 유형별로 교원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제어 : 학교안전사고, 국가배상법,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안전배려의무, 책임법리

Ⅰ. 서 론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장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심신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고방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위험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체육실기, 교육실습 등과 같은 정규수업이나 운동회,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강한 개성과 활동성으로 인하여 집단생활에서 장난이나 폭행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수행평가가 시도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는 체육수업과 과외활동 등 교실 밖에서의 사고가 많고 체험과 활동 중심의 교육확대가 안전사고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를 대신하

여 학생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폐쇄적인 회원구조, 불안한 구상권의 청구문제, 피해자에게 공제료를 받는 문제,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1] 그러므로 자력구제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해서도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주체는 누구인지, 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법리는 무엇이며,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발생 실태를 살펴본 후, 학교안전사고 당사자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고찰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발생 실태

1. 개념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대체적으로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생긴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고', '학교의 관리책임하에 발생된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고'로서 다의적으로 폭넓게 사용해 왔다.[2] 그러나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개념이 명확해졌다. 동법 제2조에서는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학교안전사고의 보상범위를 확대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3]

---

1) 김도형, "학교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73~84면.

2) 하윤수, 「학교생활과 법」, 세종출판사, 2007, 297면.

3) 백종인, "학교안전사고구제에 관한 법적 고찰 : 한국과 일본에서의 제도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2권 제3호 통권44집, 한국동북아학회, 2007, 341면.

한편 일본의 「스포츠진흥센터법」 제15조는 학교사고란 학교관리하에 아동·학생 등의 재해에 관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관리하'란 "아동·학생 등이 수업 받는 경우, 과외지도를 받는 경우, 학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 기타 학교장의 지시·승인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경우,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를 말하며,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높은 체육활동도 포함된다.[4]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일본의 「스포츠진흥센터법」에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는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영역의 과제는 다양하기 때문에 아동·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서 공히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다.[5]

학교안전사고의 특징[6]으로는 첫째, 대부분 학생들이 그 당사자로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도 책임추궁이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잠복해 있으며, 사고발생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셋째, 학교 급별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학생들에 대한 학교와 교사들의 지도·감독상의 범위와 책임에 차이가 있다. 넷째, 사고의 당사자인 학생은 민법상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 무능력자일 뿐만 아니라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로 간주되는 책임무능력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법리와는 달리 학교안전사고 특유의 손해배상법리를 형성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학교안전사고에 있어서 과실의 전제가 되는 교사의 주의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발생 실태 및 사고 유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실태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학교활동 중에 아동·학생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안전사고(일본 스포츠진흥센터법에 규정된 학교재해공제급부건수)는 2004년에 205만건이나 된다.[7] 우리나라의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사고는 2008년 48,551건 등 최근 3년간 모두 90,657건이다. 한편 학교 급별 사고건수는 초등학교가 전체 사고발생 건수 중 38.2%를 차지하며, 중학교 6,888건(28.9%), 고등학

4) 永井憲一, 「憲法と教育人権」, 日本評論社, 2006, 159面.
5) 백종인, 전게논문, 342면.
6) 이정식, "학교사고와 학교설치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세계헌법연구」 제7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3, 330면.
7) 永井憲一, 上掲書, 153面.

교 6,294건(26.2%), 유치원 1,396건(5.8%)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영역별로는 체육시간 39.6%, 휴식시간 36.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8]

학교안전사고의 유형별 분류로는 ①사고형태, 발생원인, 시간, 장소, 피해내용에 따른 유형으로 대별하는 견해,[9] ②책임소재, 사고형태, 시간, 장소, 피해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견해,[10] ③교육활동성의 관련성 정도, 교원의 임장여부, 사고발생 주체 등에 따라 나누는 견해[11]가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의 주체를 규명하고 교사나 학교측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책임소재와 교육활동의 관련성에 따라 2가지로만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책임소재에 의한 분류로서는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분류로서는 학교의 영조물(공작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와 교사의 지도하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교육활동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교육활동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재화 하는 교육내재형 사고와 방과 후의 사고처럼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연관 없이 발생하는 교육외재형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분류에서 책임소재에 따른 분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의 근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12] 교육활동의 관련성 정도에 따른 분류는 불법행위주체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안전배려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13]

Ⅲ. 학교안전사고의 손해배상책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①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②안전배려의무에 기한 학교 설립·경영자의 채무불이행책임, ③민법 제750조에 의한 학교나 교사의 주의의무위반, ④학생에 의하여 타인에게 가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책임, ⑤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피용자인 지도교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학교가 부담하는 사용자책임, ⑥민법 제758조에 의해 학교가 부담하는 공작

8) 유정현 국회의원, 국정감사자료, 2009.

9) 강일원, "학교사고로 인한 민사책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2~24면.

10) 김도형, 전게, "학교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15~16면.

11) 이정식, "학교사고에 대한 교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와 주의의무", 「사회과학논총」 제18집, 2002,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3면.

12) 강일원, 상게논문, 24면.

13) 고영아, "학교안전사고와 손해배상책임",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384면.

물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4]

1.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가. 교사의 책임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제2조), 영조물의 설치·관리 작용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제5조)에 대하여 적용된다.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칙으로서 그 법리는 어디까지나 민법의 손해배상 관련규정이 적용되고 있다.[15] 피해자가 공권력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①교사 등의 가해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나타날 것 ②사고가 교사의 고의·과실에 의할 것 ③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존재할 것 ④사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⑤교사의 직무행위로서 발생한 사고일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직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직무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직무를 권력작용에만 국한시키는 협의설, 직무에는 공권력작용 이외에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관리작용)도 포함된다고 하는 광의설, 그리고 직무를 사경제적 작용까지도 포함한 모든 행정작용이라고 보는 최광의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광의설이 통설[16]이고 판례의 입장이다.[17] 일본의 통설적인 견해는 협의설이었으나, 현재는 광의설이 지지를 받고 있으며,[18] 최근의 판례에서는 광의설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19]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작위·부작위 또는 법률행위·사실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20]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공립학교 교사의 교육활동은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1] 나아가 교사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따라

14) 장재옥, 학교스포츠사고와 학교 및 지도자의 민사책임", 「스포츠와 법」, 제3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2, 88면.

15) 대판 1972. 10. 10. 69다70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따르는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다.

16)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09, 512면.

17) 대판 2004. 4. 9. 2002다10691; 대판 1980. 9. 24. 80다1051

18) 藤田宙靖, 「行政法 I」, 青林書院, 2005, 490面.

19) 于賀克也, 「国家補償法」, 有斐閣, 1997, 26面.

20) 윤양수, 「행정법일반이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9, 515~516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위험을 동반한 기술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22]

'교사의 직무상의 행위'는 행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무행위와 견련관계가 있는 객관적 행위 및 외형적으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직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의미한다.[23] 구체적으로는 교사 등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규수업, 과외활동, 학교의 특별행사 등의 교육활동과 교육지도를 할 때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수업종료 후 학내에서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교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지도의 경우에도 교육이념의 본질에서 볼 때 교사의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24] 담당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지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는 학생의 능력발달정도, 수업의 단계, 수업내용이 가지는 위험성 등의 정도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수업 중에 학생간의 장난이나 싸움으로 인한 사고와 위험을 예견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행동관리에 충분한 배려와 지도를 실시하고, 친권자와 상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25] 교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과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인 밀접성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시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체육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26] 교사의 휴식시간 중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

21) 横浜地判 1982. 7. 16.「判例時報」, 第1057号, 107面.

22) 最高裁判所 1987. 2. 6.「判例時報」, 第1232号, 100面;시립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체육수업 중 A교사의 지도하에 다이빙연습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사지가 마비된 사고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제1심에서는 본 사건의 다이빙방법은 뛰어오면서 다이빙대를 박차고 오르는 방법으로서 뛰어 오르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담당교사에게는 뛰어 오르는 위치, 미끄러지지 않고 뛰어 오를 수 있는 장소의 확보, 다이빙 할 수 있는 충분한 깊이의 수영장의 선정, 지도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신중한 지도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지도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에 기초하여 B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横浜地判 1982. 7. 16.「判例時報」, 第1057号, 107面). 이에 B시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B시가 패소하여 상고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립학교의 교사의 체육활동이 국가배상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있었다.

23) 김형배·김규완·김명숙,「민법학강의(제8판)」, 신조사, 2009, 1602면.

24) 김도형, 전게논문, 125면.

25) 大阪地判 1980. 9. 29.「判例時報」, 第1004号, 91面.

26) 대판 2000. 4. 11. 99다44205; 대판 1999. 1. 29. 98다51657

과실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의 위법적인 직무행위로 인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사 즉 공무원에게도 직접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학설대립이 있다.[27] 먼저, 피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중 어느 쪽이나 선택적으로 배상청구 할 수 있다는 견해(선택적 배상청구설)는 그 논거로서 ① 가해행위는 국가의 행위인 동시에 공무원 자신의 행위이기도 한 점, ②헌법에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동법 제2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공무원의 직접책임을 부인하면 책임의식이 약해진다는 점, ④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익구제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든다. 이와 반대로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는 그 논거로서 ①변제능력이 충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이상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고 ②'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은 공무원이 국가 등의 구상에 응할 책임을 면하지 못함을 의미이며 ③피해자가 공무원에게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국가 등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을 때에는 국가 등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28]

이들 학설과 달리 대법원은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 질 때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였다.[29]

사견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과 봉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간의 직접 소

27) 윤양수, 전게서, 535면.

28) 대판 2003. 12. 26. 2003다13307; 대판〔전합〕 1996. 2. 15. 95다38677

29) 대판 1996. 2. 15. 95다38677; 대법원은 이전의 모든 판결에서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를 부정하였으나, 본 판결에서는 ①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를 긍정하고, ②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를 부정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송으로 인한 갈등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가 공무원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지고,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불이행의 내용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의 형태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취지라고 생각된다.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면책되지 아니하고, 감독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30]의 경우만으로 한정된다는 점 등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31] 경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공무원의 집무의욕 저하와 업무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32]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시설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토지, 설비를 포함한 주변 공간도 교육활동과 관련되고 학교의 관리범위에 포함되면 학교시설로 볼 수 있다.[33] 영조물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조물인 학교시설에 의한 사고이어야 하고, 학교시설의 설립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하며, 학교안전사고와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개념이 그 배상책임의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자(瑕疵)'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객관설과 주관설(관리의무위반설)이 있다.[34]

객관설에 따르면 설치·관리의 하자란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설치·유지·보관·수선 또는 관리 등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적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그 흠의 인정에는 설치·관리자의 과실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주관설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영조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30) 대판 2003. 2. 11. 2002다65929: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31) 김준호, 「채권각칙」, 법문사, 2007, 407면.

32) 윤양수, 전게서, 536면.

33) 대판 1995. 1. 24. 94다45302

3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7, 669~670면.

하고 하자가 발생한데 대한 설치·관리자의 주관적 귀책사유(관리의무위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 설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절대적 과실책임 또는 결과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조물의 안정성의 결여에 있어 그 설치·관리자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한도 여하가 문제된다는 입장이다.[35]

대법원 판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하여 흡연하기 위해 3층 건물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학교의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 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시하였다.[36] 또한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완결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37] 그러나 이 판례는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문제를 불가항력의 판단요소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상 합당하지 않다. 그 이유로는 먼저 일반적인 문제로서 불가항력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관리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관리자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관리자의 책임이 부인된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38]

35) 대판 2000. 4. 25. 99다54988; 대판 2000. 2. 25. 99다54004
36) 대판 1997. 5. 16. 96다54102
37) 대판 2001. 7. 27. 2000다56822

우리 판례가 영조물하자의 관념을 이처럼 안전의무확보 또는 방어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영조물의 통상적 안전성의 결여라고 이해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위반설은 객관설에 비해 피해자구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판례상 안전확보의무 또는 방어조치의무는 고도의 객관적 의무로 파악되기 때문에 양자의 실질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배상책임이 결과책임이나 무과실책임이 아니고 영조물의 하자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이다. 따라서 영조물의 하자를 안전확보의무 또는 방호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영조물의 안전성의 결여상태로 파악하는 경우, 그것은 이 관념을 영조물의 불완전상태를 바로 영조물의 하자로 파악하는 객관설에 비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 관념을 객관적 의무위반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과실책임에 입각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비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은 보다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9]

결국 국가배상법 제5조의 하자판단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동법 제2조와 마찬가지로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문제되지만, 구체적 주의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나 고의·과실의 주장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동법 제2조보다 구제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다는 것은 배상책임의 적극적 요건이므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40] 그러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에 관해 관리의무위반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설치·관리자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41] 일본에서도 하자에 대한 해석은 우리나라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42] 그러나, 교육시설에 대한 독특한 판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유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3] ①학교시설이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 즉 학교시설을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면 안전성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는 판례 ②학교시설이 통상 갖추

38) 김동희,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개념", 「법학」 제43권 제1호, 서울대학교, 2002, 120면.

39) 이정식, 전게 "학교사고와 학교설치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342~343면.

40) 김남진·김연태, 전게서, 545면.

41) 대판 1998. 2. 10. 97다32536

42) 最高裁判所 1971. 8. 20.「民集」第24巻 第9号, 268面: 국가배상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영조물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국가 및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해 과실의 존재여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43) 伊藤進·織田博子, "学校事故賠償責任の判例法理",「判例時報」第1276号, 1991, 177面.

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고발생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 ③학교시설이 구체적으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위험발생을 방지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구조, 설비를 결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판례 ④학교시설 자체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설치방법, 사용지시 등에 주목하는 판례 ⑤학교시설의 관리방법에 한정하여 주목하는 판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유형들을 분석하면, 하자는 결국 안전성 결여라고 하는 객관적 판단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4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하자의 개념을 객관설에 다소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객관적 판단을 넘어서 관리하자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가. 학생 및 학부모 등 법정감독자의 책임

(1)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학교안전사고의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당해 학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해를 가한 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지게 된다. 그러나 그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민법 제753조에 의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755조에 의해 법정감독자나 대리감독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부모는 친권자로서 일반적 지도·교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고 자녀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때에는 지도·교양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는 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즉,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냄에 있어 학칙과 질서를 지키고 교원의 지도에 따르며, 다른 학생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자신의 안전에 스스로 충실하도록 평소 가정에서 교육을 충실히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45]

(2)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책임(민법 제755조 제1항)

책임무능력자 감독책임이란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그의 감독의

44) 채우석, "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1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167~168면.

45) 이정식, 전게 "학교사고에 대한 교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와 주의의무", 216면.

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학생이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한 경우에 법정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학부모도 교육활동 등의 사고로 책임무능력자인 아동이나 학생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민법은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기준으로 책임능력여부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753조). 즉 자기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변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그의 연령을 기초로 판단된다. 민법에는 연령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판례는 대체로 만 12세 내지 만 14세 정도부터 책임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13세 3개월인 자에게 책임능력을 인정한 경우[46]가 있는가 하면, 14세 2개월의 자에게 이를 부인한 경우[47]도 있다. 이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직접행위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무능력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책임능력연령을 높게 하려는 것이며, 반면 미성년자의 행위에 관하여 고용주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역으로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을 낮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48]

책임능력을 높게 하려는 판례의 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미성년자 본인과 감독의무자 중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가를 비교하여 피해자의 구제와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49]은 인정되지만, 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혼란은 소송상 사실인정의 일반원칙에 모순되는 것이며, 법적안정성을 너무 경시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50] 책임능력의 존재유무는 행위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행위자와 행위의 관계에만 한정하여 판정할 사항이지, 손해배상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파악해야 한다. 더구나 오늘날 현실은 미성년자의 정신능력이 예전보다 월등히 향상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감독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감독자의 가해행위, 감독관계, 감독의무의 해태 및 불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46) 대판 1978. 11. 28. 78다1805

47) 대판 1978. 7. 11. 78다729

48)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도 같은 실정이다(幾代通・徳本伸一, 「不法行為法」, 有斐閣, 1993, 51面).

49) 加藤一朗, 「不法行為」 有斐閣, 1997, 145面.

50) 김준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저스티스」, 통권45호(제30권 제3호), 한국법학원, 1997, 59면.

보호·교양할 의무는 포괄적·윤리적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 후견인, 보호시설의 장 등 법정감독자의 감독의무는 추상적으로 파악되어 피감독자의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감독의무를 다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며,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가 있으면 감독의무의 해태가 있었다고 인정된다.[51] 이는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감독의무자에게 전환시키고 있는 것으로 부모는 책임능력 없는 자녀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운영되고 있다.[52]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의 성립여부이다. 민법 제755조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감독의무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감독의무자 등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학설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감독의무자 등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감독의무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자 한다.[53]

통설(민법 제750조 적용설)에 따르면 민법 제755조는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감독상의 부주의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54]

이에 대하여 판례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755조를 확대 적용하여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55] 최근에는 민법 제750조 적용설로 환원하였는데, 판례는 "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위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고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으며,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51) 이은영, 「채권각론(제5판)」, 박영사, 2008, 842면.
52) 황홍규, "학생사고와 학교·교원 등의 법적 책임", 「교육법학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1, 205면.
53) 지원림, 「민법강의(제7판)」, 홍문사, 2009. 1629면.
54) 김형배·김규완·김명숙, 전게서, 1596면.
55) 대판 1984. 7. 10. 84다카474

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인정되면 부모들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56]

나. 교사 등 대리감독자의 책임(민법 제755조 제2항)

민법 제755조는 1항에서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 등이 일반적으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에는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직접적인 보호·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판례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할 의무"라고 하고 있는 바,[57] 이는 교육법의 정신 내지 입법취지로부터 교사의 직무상 당연히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58]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시간,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59]

---

56) 대판 〔전합〕 1994. 2. 8. 93다13605; 동 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감독자의 책임은 위험책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시한 대판 1984. 7. 10. 84다카474의 판결은 폐기되었다. 그 결과 종전에는 감독자에게 과실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켰으나, 동 판결에 의해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57) 대판 1996. 8. 23. 19833; 대판 1995. 12. 26. 95다313; 대판 1994. 8. 23. 93다60588; 대판 1993. 2. 12. 92다13646

58) 장재옥, 전게논문, 90면.

59) 대판 2007. 6. 15. 2004다48775; 대판 2007. 4. 26. 2005다24318; 대판 2000.4. 11. 99다44205; 대판 1997. 6. 27. 97다15258

한편,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도 수강생을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한 판례가 있는데, "유치원이나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 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60] 감독자와 대리감독자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리감독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감독자의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법정감독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61] 대리감독자로서의 학교교사는 책임무능력자의 일정한 생활관계에 대해서만 감독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무능력자의 생활 일반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장소적·시간적으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범위도 법정감독의무자와 비교하여 제한적이다. 대리감독자의 책임은 법정감독자의 책임과 비교하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가깝고 또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도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다. 학교 설립·경영자의 책임

(1)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

60) 대판 2008. 1. 17. 2007다40437

61) 지원림, 전게서, 1632면.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56조).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은 피용자로서, 학교이사장은 사용자로서, 교장은 대리감독자로서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62]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에 기하여 그를 감독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감독자나 교사 등 대리감독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미 교장과 교사에게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히 학교 설립·경영자 등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다.[63] 사용자는 업무집행과 관련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64]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보호에 있는데, 피용자인 교사는 손해를 배상할 충분한 자력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65] 이렇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도 맞는다고 할 것이다.[66] 다만, 교사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소속 교사의 직무상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당해 교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교사에게 경과실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요건이 비교적 용이한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67] 학교안전사고에 있어서 교내·외적으로 교육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법조문은 민법 제755조를 둘러싼 대리감독자의 책임문제와 동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둘러싼 문제로 집약되며, 대리감독자의 주의의무(보호·감독의무) 위반문제와 교사의 피용자로서의 직무상의 주의의무[68] 위반이라는 책임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주된 학교

62) 장재옥, 전게논문, 91면.
63) 고영아, 전게논문, 391면.
64) 김형배, 「민법학강의(7판)」, 신조사, 2008, 1563~1564면.
65) 범경철, "스포츠시설 소유자의 법적책임", 「스포츠와 법」 제3권, 2007, 107면.
66) 대판 1985. 8. 13. 84카타979
67) 김도형,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제16집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260~261면.
68) 직무상의 주의의무 내지 안전의무는 여기서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며 자기의

안전사고의 핵심부분일 것이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사용관계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 이 관계는 반드시 정식 고용계약에 의거할 것을 요하지 않는데, 일시적이거나 무상이거나 혹은 도급(민법 제632조)이나 위임(민법 제643조)의 관계이더라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의 관계가 있으면 사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사용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 교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①교원의 수업지도 외에 동아리활동, 특별활동, 학교행사 중의 사고도 포함된다. ②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하여 교원 이외의 자를 감독, 코치로 위촉한 경우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학교의 지휘·감독관계에 있으면 사용자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 소속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지휘·감독을 벗어난 경우는 사용자책임이 부정된다.[69]

③스포츠단체가 주최하는 경기에서 주최자측 지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스포츠단체가 부담한다. 그러나 인솔교원의 지도상의 과실은 그 교원의 책임이다.[70]

(2)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차적으로는 공작물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게 하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묻게 하는 바, 사립학교의 시설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민법 제758조에 기하여 학교설립·경영자 등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

직업이나 영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능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직업과정을 안전하게 조직할 의무를 포함하며, 우리판례에 나타난 업무상 주의의무, 실화책임에서의 주의의무가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이은영, 전게서, 790~791면).

69) 대판 1999. 10. 12. 98다62671: 대학교 소속의 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할 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되어 합동강화훈련을 지도하다가 대표선수로 선발된 같은 대학교 학생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대학교 측은 코치의 위 합동강화훈련 중의 지도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이 없으므로 그 사고에서 국가는 위 체조코치의 사용자라 볼 수 없다.

70) 대판 1980. 5. 27. 80다551: 보이스카웃 인솔교사로서는 하천폭포와 같이 사고위험이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야영훈련을 피해야 하고 그러한 곳에서 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보이스카웃 연맹수칙에 따른 인원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수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한 후에 피해자가 다른 대원들을 이탈, 위 폭포에서 목욕하다가 익사하였다면, 이는 인솔교사의 직무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 학교법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는 없다.[71]

공작물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에 의한 사고이어야 하며, 그 학교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학교안전사고와 그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공작물의 점유자가 학교안전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조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여야 한다.

3.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가. 학교재학계약의 법리

학교재학계약이라 함은 학교와 학생 또는 학교와 학생의 친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교육위탁계약을 말하며, 법적 성질은 민법의 위임계약 또는 준위임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72] 친권위임설[73]에 의하면, 부모는 그들이 해야 하는 보호·감독기능을 학교가 대신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주로 민법상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으나, 재학계약상의 무 또는 재학계약관계에 근거한 안전배려의무를 학교측에 부담함으로써, 계약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학교안전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성격은 학교재학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법적인 학설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재학관계를 영조물이용관계로 보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보고, 사립학교의 경우 사적 계약관계로 보고 있다. 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할

71) 범경철, 전게논문, 117면.

72) 하윤수, "재학계약론에 관한 고찰", 「교육법학연구」, 제14-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2, 225면.

73) 친권위임설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유효하다.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법원의 친권위임설에 대한 개념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교육과 통제는 교육위원회, 교육장, 교장, 교사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통제는 보건, 적절한 환경, 필요한 규율, 도덕성의 향상, 기타 전반적인 분야에까지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원보증책임설이 주장되기도 하는데, 민법 제755조의 감독의무는 민법 제913조의 보호·감독의무와 같은 것이므로, 감독자는 마치 신원보증인과 같이 성년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김형배, 전게서, 1561면).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제반요소를 제거해야만 할 의무와 함께 교육을 실시할 급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러한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학계약의 당사자(학생 또는 학부모)는 그와 같은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재학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서 구하는 경우 그 의무의 범위, 내용을 확정 또는 확장할 수 있고, 그 결과 손해에 대한 귀책 근거를 명확히 하여 친권자나 학생을 입증책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74] 다시 말하면, 재학관계를 계약관계로 파악하는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피해학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계약상의 의무로 파악하고,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의무 즉, 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생명, 신체상 안전에 관하여 배려할 의무에 대한 해태에 그 귀책근거가 있다고 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75] 이 경우 계약당사자를 학생으로 하는지 또는 학부모로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보호자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契約의 第3者 保護效」에 의하여 피해학생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설립자의 특수불법행위책임과 별도로 학교설립자는 계약상대방인 소속 학생에 대하여 안전한 시설과 설비의 확보, 안전확보를 위한 교사의 감독의무의 이행, 학생의 사고회피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의 이행 등의 의무가 있다.[76]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은 소멸시효나 입증책임의 문제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즉, 피해자(채권자)측이 안전배려의무위반의 존재 및 그 의무에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지고, 가해자(채무자)측은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항변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77] 이 경우 위험한 결과발생의 예견 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는 위험한 결과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견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78]

나. 교사의 안전배려의무

정규수업은 학교교육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학생은 교사 등 학교측의 수업계획

74) 学校事故研究会, 「学校事故の事例と裁判, 学校事故全書」, 総合労動研究所, 1997, 276面.
75) 김도형, 전게논문, 145면.
76) 하윤수, 전게논문, 237면.
77) 강일원, 전게논문, 56~57면.
78) 장재옥, 전게논문, 94면.

에 따라 교사의 지도와 통제하에 수업을 받는다. 그러므로 교사 등은 수업을 실시할 때에 학생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주의의무는 과외활동 등 임의활동에 비하여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위험성을 내포하는 과제를 부여하면, 학생들은 그 위험을 극복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업계획에 필요한 정책이나 실시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은 주의의무의 한계로서 교사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는 계약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된 급부는 아니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이다.[79] 이 의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계약관계나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관계가 없더라도 교사에게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감독할 안전배려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학교측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주의의무와 안전배려의무는 내용적으로 거의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판결 중에는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하여 "공립고등학교의 체육교사의 지도하에 체육시간에 공 던지기 연습을 하던 학생이 야구부원이 던진 공에 맞아 다친 경우, 야구부원을 지도·감독하는 야구코치와 위 학생들을 지도하는 체육교사에게는 야구부원에게 미리 운동장에서 위 학생들의 연습조에 끼어들어 공을 던지지 못하도록 주의를 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막지 못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80] 또한 공립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학교측과 외부스포츠센터와 사이에 시설물이용계약에 따라 학교 밖 수영장에서 수영수업 중 물속으로 뛰어들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손상을 입은 사안에서"학교설립자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입학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계약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계약관계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고 위와 같은 권리에는 교육의 여건정비,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에 대하여 학교측은 학생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라고 하였다.[81]

일본에서는 교사의 다소 엄격한 의미의 안전배려의무가 강조되고 있는데,[82] 판례는

79) 김준호, 「채권각칙」, 법문사, 2007, 258면.
80) 춘천지판 1987. 6. 26. 선고 86가합177
81) 대구고판 1997. 6. 13. 선고 96나1987
82) 채우석, 전게논문, 175면.

고교생이 마라톤대회에서 출전하여 달리던 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학생의 주행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배치된 교직원에게는 피해학생이 넘어진 장소처럼 배치장소 부근에서 보이지 않는 마라톤 코스상의 장소에 대해서도 넘어진 자, 낙오자의 유무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을 게을리 하여 본건 사고의 발견을 지연시킨 것"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83]

다. 학교 설립·경영자 등의 안전배려의무

학교 설립·경영자의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안전배려의무가 있을 것이 전제가 되는데,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근거와 범위가 문제가 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학생간의 재학관계가 학교의 배정, 입학허가 등 행정처분에 의한 계속적인 영조물이용관계로서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인정여부는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다.[84]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에 대하여 학교설치자의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의 법리구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85] 그런데, 아직 사고에 의한 손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학생이 학교설립의 주체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설립·경영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청구와 관련한 판례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안전배려의무가 학교재학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안전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학교의 시설·설비의 불비나 하자로 인하여 신체에 위험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학생은 학교측에 대하여 안전한 시설·설비를 구비하도록 요구할 권리나 교육활동시 위험성이 있는 시

83) 静岡裁判所富士支部 1986. 10. 4.「判例時報」, 第1309号 131面.

84) 이정식, 전게 "학교사고에 대한 교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와 주의의무", 220면.

85) 일본의 판례는 "안전배려의무는 어느 법률관계에 기하여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당해 법률관계의 부수의무로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칙상 부담하는 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最判 1975. 2. 25.「民集」第29巻, 143面)이라고 판시했고, 그 후 국가공무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最判 1981. 2. 16. 第35巻, 56面)한 이래, 고용계약 이외에 의료사고, 학교사고, 자동차사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하고 있다(이정식, 전게 "학교사고와 학교설치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377면).

설·설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안전사고 특유의 배상책임법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실태를 살펴본 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그리고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행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본의 판례도 대부분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재학계약의 법리, 교사의 안전배려의무,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의 안전배려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특정이 필요하며, 아직 이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판례를 통해서 이에 대한 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보다는 학교 설립·경영의 주체가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교사 개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게 된다면, 학생·친권자가 교사 등의 과실을 주장·입증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의 파탄이 될 수 있고, 교육내용을 위축시키게 되어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 등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는 학교안전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 즉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보호·감독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발생의 유형별로 교사나 학교설립자, 학교운영자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김남진 · 김연태, 「행정법 Ⅰ」, 법문사, 2009.

김준호, 「채권각칙」, 법문사,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7판)」, 신조사, 2008.

김형배 · 김규완 · 김명숙, 「민법학강의(제8판)」, 신조사, 2009.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7.

윤양수, 「행정법일반이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9.

이은영, 「채권각론(제5판)」, 박영사, 2008.

하윤수, 「학교생활과 법」, 세종출판사, 2007.

강일원, "학교사고로 인한 민사책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고영아, "학교안전사고와 손해배상책임",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김도형, "학교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_____,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제16집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김동희,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의 개념", 「법학」 제43권 제1호, 서울대학교, 2002, 120면.

백종인, "학교안전사고구제에 관한 법적 고찰 : 한국과 일본에서의 제도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2권 제3호 통권44집, 한국동북아학회, 2007.

범경철, "스포츠시설 소유자의 법적책임", 「스포츠와 법」 제3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이명갑, "민법 제758조의 불법행위법체계상의 의의와 위치", 「대한변호사협회지」 제130호, 1987.

이정식, "학교사고에 대한 교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와 주의의무", 「사회과학논총」 제18집,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_____, "학교사고와 학교설치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세계헌법연구」 제7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3.

장재옥, "학교스포츠사고와 학교 및 지도자의 민사책임", 「스포츠와 법」, 제3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2.

채우석, "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통권제1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하윤수, "재학계약론에 관한 고찰", 「교육법학연구」, 제14-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2.
황홍규, "학생사고와 학교·교원 등의 법적 책임", 「교육법학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1.
加藤一朗, 「不法行為」, 有斐閣, 1997.
幾代通·徳本伸一, 「不法行為法」, 有斐閣, 1993.
藤田宙靖, 「行政法Ⅰ」, 青林書院, 2005.
四宮和夫, 「不法行為」, 青林書院, 1990.
永井憲一, 「憲法と教育人権」, 日本評論社, 2006.
永井憲一, 「憲法と教育人権」, 日本評論社, 2006.
于賀克也, 「国家補償法」, 有斐閣, 1997.
伊藤進·織田博子, "学校事故賠償責任の判例法理", 「判例時報」 第1370号, 1991.
学校事故研究会, 「学校事故の事例と裁判, 学校事故全書」, 総合労動研究所, 1997.

[Abstract]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for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Kim, Sang-Chan
Professor, Law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Cho, Doo-Hwan
PH. D. Candidate, Dept. of Law, Jeju National University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often happen unexpectedly, but the subject and limitation of liability on damages do not establish clearly because many kinds of legal relationships are expected by forms of accidents such as a relationship of victimized students, injurer students and their guardians, a relationship of students, teachers and a principle and a relationship of students, the country, the municipality and school founders and so on.

A responsible person of damages can b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patterns of the

accidents. In other words, a responsible person of damages 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are also done depending on whether the accidents are caused by violation of safety obligations on condition consolidation of the school, whether the concerned school is national, public or private, whether the accidents is related to school activities.

This paper is made on a basis on theories and leading cases reminding the purpose of modern illegal act system which is equitable and appropriate between injurer students and victimized students to protect teenagers and prevent contraction in school activities.

On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there are contract and default liabilities as a duty of care for safety under school contract as an illegal act except school facilities accidents by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nd the equipment liability on civil law in the legal principles for damage. Among these, taking an illegal act is very common.

In the case of asking the illegal act about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it should make a school founder and its manager a system being responsible for the final liability for damages than it shifts the liabilities for damages onto teachers.

Also, the responsibility of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would rather make legal principles of default based on a relation of school contract than illegal act considering educational trust relationship. Because it is important for judgement on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to predict, the stability of school curriculum is very important by mapping a logical standard for presuming school faculties' faults on accidents.

Key words :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illegal act, compensation for damage, default, duty of care for safety, legal principle of liability